

# 서울시보

Hi Seoul  
SOUL OF ASIA

서울시 홈페이지 | www.seoul.go.kr

제3030호 2011. 02. 28.(월)



※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

서울광장 스케이트장

기관의 장		공								
선			람							
람										



발행인 |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| 시민소통기획관  
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☎731-6818

목 차

◆ 자치법규

[규 칙]

제3795호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 ..... 2

**자 치 법 규**

**[규 칙]**

◆ 서울특별시규칙 제3795호

**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**

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인

2011년 3월 3일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「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)** 「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.

**제3조(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)**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.

1.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
2. 도면
3.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

**부 칙**

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[별표]**

**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(제2조 관련)**

1. 공원 및 광장

가. 규격 및 재질

- 1) 규격 : 210cm×160cm(가로형)
- 2) 재질 : 메타세콰이어 자연속성목, 오일스테인도장

나. 도안요령

1) 내용

- 가) 좌측 : 금연로고 표시, 금연공원(광장) 표시
- 나) 우측상단 : 금연구역 경계(도면 및 금연구역 범위) 표시
- 다) 우측하단

(1) 금연구역 조성목적,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 표시 : “이 공원(광장)은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20○○년 ○월 ○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

되었습니다.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위 구역에서는 금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”

(2) 서울특별시 휘장 표시

2) 글씨체 : 국문-한양태백볼트체, 서울남산체EB / 영문-헬베티카볼트체

3) 색상

가) 바탕색 : 공원색(DIC 644)

나) 금연로고 : 흰색, 적색(DIC 198), 연두색(DIC 61)

다) 도면 : 연두색(DIC 61), 흰색, 검정색

〈도안 예시〉



2. 중앙차로 버스정류소

가. 규격 및 재질

1) 규격 : 60cm×80cm(세로형)

2) 재질 : PVC재질(양면), UV코팅

나. 도안요령

1) 내용

가) 좌측상단 : 서울특별시 브랜드 표시

나) 우측상단 : 간접흡연제로 서울 로고 표시

다) 중앙 : 금연버스정류소 이미지 표시

라) 하단

(1) 금연구역 조성목적,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, 금연구역 경계 표시 : “이 정류소(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의 중앙정류소로 구성된 구역)는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1년 2월 28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.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위 구역에서는 금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”

(2) 서울특별시 휘장 표시

- 2) 글씨체 : 국문-서울남산체EB / 영문-헬베티카볼트체
- 3) 색상
  - 가) 바탕색 : 흰색
  - 나) 글색 : 검정색, 흰색, 적색(DIC 2483)
  - 다) 테두리 : 연두색(C40Y100)
  - 라) 픽토그램 : 초록색(C40Y100)

〈도안 예시〉



이 정류소(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의 중앙정류소로 조성된 구역은  
간접흡연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 
2000년 0월 0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. 위반사에는  
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위 구역에서는 금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서울특별시

3. 공통사항

가. 표시방법

- 1)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내표지판의 모양, 크기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.
- 2) 안내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.

나. 설치방법

- 1) 안내표지판은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.
  - 가)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이동이 잦은 지역
  - 나) 시민들이 흡연을 위하여 자주 찾는 지역
  - 다) 그 밖에 금연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
- 2) 표지판,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.
- 3) 눈·비·바람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게 철제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.

다. 관리기준

- 1) 「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」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안내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한다.
- 2) 안내표지판 등의 색이 바래어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.

3) 안내표지판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한다.

**제안이유 및 주요내용**

1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」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 위임한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경계의 표시방법과 그 밖에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함 (안 제2조 및 별표)

- 안내판의 모양, 재질, 도안요령, 안내문구, 글씨체 및 색상, 표시방법, 설치방법, 관리기준을 정함

나. 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을 정함 (안 제3조)

- 안내표지판에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, 도면,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쉬운 그 밖의 방법으로 표시토록 하여 시민의 이해를 제고함

